

#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

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!

김희걸 의원입니다.

지난 4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,  
전년대비 연간 점용료가 10%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점용료 산정 방법에 대한 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사항과 소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면제기준을 현행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영 개정사항을 각각 반영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고,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